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정을호 · 차지호 · 문정복
임호선 · 김영호 · 박수현
이기현 · 강준형 · 신영대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하는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u>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u> 6. (생 략)	<u>제35조의2(심리상담 지원) ① 국</u> <u>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u> <u>아동, 피해아동 및 제38조제2항</u> <u>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u> <u>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u> <u>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u> <u>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하</u> <u>는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u> <u>는 아니 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u> <u>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